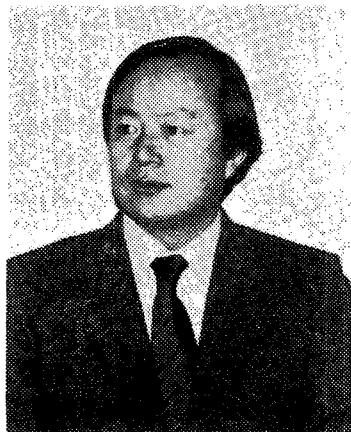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sup>②</sup>



“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대개 정부에서 해오던 바와같이 오염규제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

구연창

〈경희大법대학장·法博·본보편집위원〉

## V. 評價代行의 許容

종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취지를 1981년 12월 環境保全法改正과 함께 同法 제5조의 2에서 새로이立法化한 것이 環境影響評價의 代行이다. 評價主體를 行政機關의 長으로만 국한하고 있었던 1977년의 환경보전법에서는 公共團體나 政府投資機關은 그 評價主體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代行制度가 필요했었다. 그런데 1981년의 法改正에서는 代行制度를 一般化시켜 버렸다.

우리에게 생소하기 짝이없는 환경관리기술인 環境影響評價에 관하여 評價主體의 技術的·人

的 資源이 부족한 실정을 배려한 점에서 代行을 허용한立法措置는 일응 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代行制度가 評價主體의 評價能力缺如를 보완해 주고, 財政의 인節減을 가져다 주며, 또한 環境關係의 專門家들에게 雇傭效果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代行制度施行의 長期化 내지 固定化는 行政政府內의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시키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評價主體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第3者的 내지는 傍觀的姿勢를 조성시킴으로써 평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할 우려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목적은 결코 科學的으로 정교한 환경의 조사·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의 意思決定에 있어 그 環境的側面을 事業에 충분히配慮함을 확보케 하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다.<sup>43)</sup> 評價 및 評價書의 作成은 단지 이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評價의 代行은 意思決定過程과 環境評價를 制度의 으로 分離시켜, 評價書는 이미 내려진 決定을 正當化 내지 合理화시키는 文書로서 그 기능을 발전시키게 한다. 代行制度의 시행이 長期化되면 될수록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바람직한 方向으로의 發展내지 定着化는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代行制度는 잠정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니된다.<sup>44)</sup> 이미 양성된 評價主體인 기관밖의 전문가들을 部分的으로나마 기관 안으로誘致함으로써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기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본다.

## VII. 評價의 適正性確保

### 1. NEPA의 경우

NEPA下의 환경영향평가법은 節次法의 性格을 지니며 評價의 適正性 및 實効性的 確保는 評價主體의 自律의 統制에 의존하고 있다.<sup>45)</sup> CEQ나 EPA 그외의 어느 기관도 EIS에 대한 許可등 規制權을 가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EIS 節次는 關係機關도 一般市民에 公開하여 그들의 批判·論評을 널리 허용함으로써 評價主體의 自律의 抑制와 均衡에 의하여 評價의 適正性을 維持·確保하려는 것이 그 기본구조인 것이다.<sup>46)</sup>

그렇기 때문에 NEPA시행 초기에 있어 法의 實効性이나 評價의 適正性의 確保는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CEQ의 노력, 議會의 聽問會開催, 評價節次의 公開性確保, 그리고 특히 法院의 적극적인 關與는 評價의 適正性 確保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法施行後 예상하지 못했던 法院의 적극적인 介入은 NEPA의 節次의 實効性을 크게 提高시켜 EIS 節次의 遵守를 실현시켰다.<sup>47)</sup> 그러나 NEPA의 實體의

遵守 즉, NEPA의 근본목적의 실현은 아직도 未達成의 문제로서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1978년 새로이 제정된 CEQ의 規程도 이 궁극적인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sup>48)</sup>

### 2. 우리 나라의 경우

規制法의 성격을 지닌 우리의 環境影響評價法下에서는 評價의 適正性 내지 實効性 確保는 오직 環境廳의 統制에만 의존하고 있다. 評價節次의 公開를 통한 市民의 監視的機能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法院에 의한 司法的審查도 기대할 수 없다.<sup>49)</sup> 따라서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의 實효성 및 評價의 適正性은 環境廳當局의 자세에 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環境保全法의 實효성이 현저히 낮은 현실정하에서 유독 환경영향평가법의 實효성만이 높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더구나 評價의 代行을 法의 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평가제도의 근본목적을 성취하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이미 결정된 계획을 正當化 내지 是合理화하는 수단으로서 評價書가 이용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sup>50)</sup>

## VII. 環境行政의 民主化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도 政治의 民主化와 함께 行政의 民主化도 새로운 課題로서 관심을 모우기 시작하였다. 環境行政의 民主化是一般行政의 民主化와 그 軌를 같이 함은 물론이다. 環境行政의 民主化는 구체적으로는 環境行政의 意思決定過程에의 市民參與와 環境行政情報에의 接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문제된다.

### 1. 環境行政意思決定에의 市民參與

#### (1) 市民參與의 意義 및 機能

市民參與(citizen participation)란 계속적인 双方通行의 커뮤니케이션節次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51)</sup> 市民參與의 기본목적은 行政의 意思決定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個個의 市민이나 團體로부터 나온 意見이나 情報·資料의 効率的利用을 增進함에 있다.<sup>52)</sup> 이와 같은 市民指向的活動은 市民參與란 말 이외에도 住民參與(resident participation) 또는 公衆參與

(public participation) 등 여러 가지로 불리운다.

특히 環境影響評價節次에서의 市民參與의 目的을 좀더 상세히 열거해 보면 ① 環境에 관한 情報의 전달 및 市民의 教育 ② 문제점, 필요성 및 중요한 價值의 認識 ③ 意見의 제시 및 문제점의 제시 ④ 行政에 관한 反應 및 휴이드백 (feed back) ⑤ 代案에 대한 評價·檢討 ⑥ 相衡되는 해결안에 관한 意見의 一致 등이다.<sup>53)</sup>

그런데 環境에 관한 行政意思決定에 있어서의 市民參與에 관하여는 그 利點과 不利益이 적잖이 논의되어 왔다. 그 利點을 보면 ① 代辯되지 않기 쉬운 利害關係人들에게 그들이 意見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 주며 ② 個個의 市民은 특히 어떤 價值나 要因이 쉽게 計量化할 수 없는 경우에 意思決定者에게 有益한 情報를 제공해 준다. ③ 行政機關과 그 意思決定에 대한 市民의 信賴感을 提高시켜 주고<sup>54)</sup> ④ 節次가 市民에게 公開됨으로써 政治的 내지는 行政의 意思決定者에게 좀더 深思熟考하도록 해 준다. 또한 ⑤ 當面의 事業 및 問題에 관한 것 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對處토록 해 준다.<sup>55)</sup>

다른 한편, 市民參與의 不利益한 점도 적지 않다. ① 市民參與는 과다한 費用을 들게 하고 ② 많은 새로운 觀點이 제기되기 때문에 문제점에 관한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고 ③ 參與者側의 知識缺如로 인하여 잘못된 情報를 접수케 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④ 事業推進의 자연 및 사업비용의 增大와 함께 市民參與節次 결과의 不明確性 등도 그 예로 든다.<sup>56)</sup>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市民參與의 節次가 事前에 잘 계획되어 적절히 운영된다면 그 利點이 不利益을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市民參與는 民主主義·정치이념의 요청에 부합된다 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들 수 있다. 自由民主主義의 先進諸國에서는 行政에의 市民參與 따라서 環境行政에의 市民參與는 一般化되고 있다. 특히 NEPA下의 EIS節次에서의 市民參與는 強制되고 있다.<sup>57)</sup>

## (2) 環境保全法과 市民參與

一方通行의 構造에 익숙해져 있는 전통적인 大陸式 行政의 틀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環境行政에 있어 市民參與란 전혀 배려되고 있지 않음은 一般行政의 경우와 같다. 環境行政과 관련하여 市民參與의 기회가 강력히 保障되어 있는 美國의 NEPA下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市民參與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sup>58)</sup> 規制法의 性格을 지니게 된 우리 나라 環境影響評價制度의 特質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行政節次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行政의 民主化를 위해 聽聞會制度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다.<sup>59)</sup> 그러나 그 試圖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微微하기 짝이 없다. 물론 자칫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市民參與가 利點보다는 不利益을 더 가져다 줄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實情에 맞는 市民參與를 具現하기 위한 調査·研究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아마도 市民參與節次를 環境行政에 導入함에 있어 가장 먼저 試圖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環境影響評價節次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利害關係人 등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評價節次上 참여하여 그 意見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우리나라 環境影響評價制度의 중요한 改善課題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 2. 環境情報에의 接近

다른 一般行政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環境行政의 情報는 行政機關에 의하여 獨占되어 왔고, 그 公開는 사실상 禁止 되다시피 했던 것이 과거의 政府方針이었다. 그러나 環境情報 内지 資料의 公開없이는 環境行政의 積極化는 도모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環境問題에 대한 對策은 대개 無關心의 단계에서 告發의 단계로, 그리고 施策의 단계를 거쳐 汚染으로부터의 解放의 단계로 展開·發展된다고 볼 수 있는바,<sup>60)</sup> 無關心의 단계에서 告發의 단계로 나아가 施策의 단계로 前進함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 環境資料의 公開·公表 그리고 그 利用自由를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1년의 環境保全法 改正에서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國內外의 資料·情報를 環境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公開하거나 市民의 利用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sup>61)</sup> 종래의 環境行政에 있어서의 公開에 관한 기본태도 보다는 상당히 發展되었지만 아직도 不完全하기 짝이 없다. 公開 및 資料提供의 與否를 環境廳長의 裁量事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市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公開·提供할 義務를 지는 것으로 해야 하며, 더 나아가 環境影響評價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擴大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른바 「 알 権利」가 새로운 憲法上의 基本權으로 確立된다면 行政節次나 情報에의 接近은 立法을 통하여 保障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美國의 情報公開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65)은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 VII. 結論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美國의 그것을 標本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實情에 맞게 현저히 變刑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제도는 새로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國家에게는 새로운 類型의 평가제도의 標本을 제시해 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現行의 評價制度는 평가제도 본래의 근본취지를 실현시킴에 있어서는 그 자체에 적잖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評價書는 이미 決定된 계획을合理化하기 위한 書類로서 밖에 기능을 하지 못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시행된지 4년 남짓한 결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계공무원 등의 關心을 다소나마 환기시킬 수 있었고 環境影響評價關係의 기술을 발전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Washington, D.C.: Potomac Ass'n Book 1972), pp.78 ~ 80.

- 2) 公害 내지 環境問題에의 法的 接近方法은 鎮壓的·對症療法的인 것으로부터 適正管理的인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前者は 汚染防止가 주된 對象이었으나, 後者에서는 環境管理 및 保全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具然昌, 環境法論(서울: 法文社, 1981), pp.50 ~ 52 참조.
- 3) Public Law 91 ~ 190, 42 U.S.C. 4321~4347, Jan.1, 1970, as amended by Pub. L. 94-83, Aug. 9, 1975.
- 4) 各國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立法例의 상세는 蘆在植外, 環境管理시스템開發 및 Data Center 運營: 1979 年度 報告書(서울: 한국원자력연구소, 1980), pp.10 ~ 24; S.Ercman, ed., European Environmental Law (Bern, Switzerland: Bubenberg Verlag AG, 1977); G.Wandesforde-Sm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Community" 등 참조.
- 5) 環境保全法(法律 제 3078 호, 1977.12.31) 제 5조 참조.
- 6) 環境影響評價의 定義에 관하여는 R. Jain, et al.,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N.Y.: Van Nostrand Reinhold, 1977), p. 3; 權泰梭外, 「國土利用計劃과 環境影響評價制度確立: 外國實態研究」, 環境論叢(서울大環境大學院) 제 5 권 제 1 호 (1978), p. 3; 鄭萬朝, 「環境影響評價制度」, 環境法研究(韓國環境法學會) 創刊號(1979), p.54; 原田尚彦, 「環境影響評價 - 法制化の行方」, 增刊總合特集 № 15 (1979.7.31) p.129; 環境廳告示 제 84-5 호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 2조 1호 등 참조.
- 7) 具然昌, 環境法論, pp.334 ~ 335.
- 8) R. Jain, et al.,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p. 3.
- 9) Ibid., p. 20.

- 10) L. Caldwell, "Is NEPA Inherently Self-defeating?" 9 Environmental Law Reporter 50001(1979); N. Orloff and G. Brooks,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Cases and Materials (Washington, D.C.: Bureau of National Affairs, 1980), p.259; A. Miller, F. Anderson and R. Lirof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Agency Policy Making: Neither Paper Tiger Nor Straitjacket," 6 Env. L. Rep. 50020(1976).
- 11) 스웨덴, 西獨, 오스트랄리아등의 제도가 이 범주에 듦다.
- 12) 美國 NEPA下의 평가제도가 그 대표적 인 것이다.
- 13) 이에 관한 상세는 徐元宇,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問題點」, 論說集(法務部) 제 4집 (1980.7), pp.317 ~ 320 참조.
- 14) Ibid., p.317.
- 15) Y.C. Koo, "The EIS Process and Decision-making"(unpublished paper in the Seminar on Land Policy, Univ of Wisconsin, Madison, 1981. 12), p.12.
- 16) 徐元宇,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問題點」, p. 319.
- 17) 具然昌, 「韓國 環境影響評價制度에 관한 몇 가지 考察」, 環境法研究 제 4권 (1982), pp.167 ~ 169 참조.
- 18) 環境保全法施行令 제 4조의 2 및 제 4조의 3 참조
- 19) 具然昌, 「韓國 環境影響評價制度에 관한 몇 가지 考察」, p.170.
- 20) NEPA, § 102(2)C 참조.
- 21) F. Anderson, NEPA in the Courts (Baltimore: RFF, 1973), pp.56 ~ 63.
- 22) R. Jain, et al.,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p.33; CEQ Regulations Implementing § 102(2) of NEPA(1978), §1501.3 및 1508.9 참조.
- 23) 1975 회계년도종 EIS作成要否判斷의 對象이 되었던 行政處分 및 行爲의 숫자는 30, 000 件이었다고 CEQ가 보고하고 있는바, 年平均 EIS作成件數가 1,000 件 정도인 것으로 보면 EIS作成件數는 少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R. Liroff, "NEPA Litigation in the 1970s," 21 Natural Resource J. 317, 320 ~ 321(1981) 참조.
- 24) L. Caldwell, "NEPA : Retrospect and Prospect", 6 Env. L. Rep. 50030(1976).
- 25) Lord Ashby, "Backgroun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 O'riordan and R. Hay, e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stmead, England: Saxon House, 1976), p.6; G. Wandesforde-Sm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Community," pp. 36 ~ 75. 참조.
- 26) 흔히 評價對象을 民間事業에 까지 확장할 것이 주장되지만 현실정하에서는 적절한立法態度인 것 같다.
- 27) 종래의 평가서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단서 참조.
- 28) CEQ Guidelines Implementing §102(2) (C) of NEPA, August 1, 1973 참조. 이것은 1970년 처음 公布한 후 세 차례의 改正을 거친 것이다.
- 29) CEQ,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An Analysis of Six Years' Experience by Seventy Federal Agencies (Washington, D.C.: CEQ, 1976) 참조.
- 30) CEQ Regulations Implementing §102 (2) of NEPA, Nov.29, 1978 참조.
- 31) Ibid., §1501.3.
- 32) Ibid., §1508.9.
- 33) Ibid., §1501.4(e) and §1508.13
- 34) Ibid., §1501.7.and §1508.25
- 35) Ibid., §1502.9 ~ 18.
- 36) Ibid., §1502.19.
- 37) Ibid., §1502.9 ~ 19.
- 38) Ibid., §1505.2.
- 39) 흔히를 NEPA를 Full Disclosure Law 라고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P. Erickson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N.Y.: Academic Press, 1979), p.49.
- 40) 環境保全法施行令 제 4 조의 2 제 2 항 참조.
- 41)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청장은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구속력이 있다. 環境保全法施行令 제 4 조의 3 제 2 항 참조.
- 42) A. Macbeth, "NEPA after Five years", 2 Colum. J. Env. Law 1, 3(1975) R. Andrews, "NEPA in Practice: Environmental Policy or Administrative Reform", 6 Env. L. Rep. 50006(1976).
- 43) P. Culhane, "Federal Agency Organizational change in Response to Environmentalism," 2 Humboldt J. Social Relations 31(1974); J. Hanson, "Agency Decision Making Under the WEPA," 1977 Wis.L.Rev. 111, 117 ~ 118(1977) 참조.
- 44) 具然昌,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은 適正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環境保全協會報 제 83 호 (1985.1.30), pp.2 ~ 3 .
- 45) J. Curlin and H. Hughe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 Analysis of Proposed Legislative Modifications -First Sess. 93rd Cong. (Washington, D.C.: GPO 1973). p.1
- 46) D. Dreyfus and H. Ingram, "NEPA: A View of Intent and Practice," 16 Nat. Res. J. 243, 259(1976); H. Jackson, "Environmental Quality, the Courts, and Congress," 68 Mich. L. Rev. 1079(1970) 참조.
- 47) CEQ, Environmental Quality: The Sixth Annual Report (Washington, D.C.: GPO, 1975), p.635; CEQ,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p.23; Note, "Imple-
- 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88 Yale L.J. 596, 611 (1979) 참조.
- 48) J. McDermott, "Improving NEPA: New Regulations of CEQ," 8 Boston U. Env. Aff. L. Rev. 89.100 ~ 109(1979); M. Fisher, "The CEQ Regulations: New Stage in the Evolution of NEPA," 3 Harv. Env. L. Rev. 347, 348 ~ 349(1979) 참조.
- 49) 鄭萬朝, 「環境影響評價制度」, p.71; 徐元宇,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問題點」, pp. 331 ~ 332.
- 50) 具然昌, 「環境影響評價書의 作成은 適正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pp. 2 ~ 3 .
- 51) L. Can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ew York: McGraw-Hill, 1977), p.220.
- 52) Ibid.; J. Heer, et al.,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Statements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7), pp.138~140; J. Mater, Public Hearings Procedures and Strategies: A Guide to Influencing Public Decision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84), pp.16 ~ 17.
- 53) L. Can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222; N. Wengert, "Citizen Participation: Practice in Search of A Theory," 16 Natural Resources J. 23(1976).
- 54) L. Can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221
- 55) Ibid., p.222; R. Cramton, "The Why Where and How of Broadene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60 Georgetown L.J. 525, 527 ~ 531(1972).
- 56) Ibid., pp.532 ~ 533; P. Cheremisinoff, et al.,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Impact Statement Handbook (Ann Arbor: Ann Arbor Science, 1977), p.32;

- L. Can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p. 221 ~ 222.
- 57) Supra 註 36) ~ 39 참조.
- 58) NEPA下의 市民參與에 관하여는 F. Anderson, NEPA in the Courts, pp 224 ~ 234; N. Orloff,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rocess: A Guide to Citizen Action (Washington, D.C.: RFF, 1978), pp. 57 ~ 58 참조.
- 59) 한例가 1981년 改正된 環境保全法 제 49조 제 2항에서는 防止施設業의 登錄取消, 그리고 同法 제 50조 제 4항에서는 產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取消의 處分을 할 경우에는 당해 防止施設業者 및 產業廢棄物處理業者에 대하여 聽聞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60) 徐燉玗, 「序論: 公害로부터의 自由」, 法과 公害(韓國法學教授會, 1974), p. 6.
- 61) 環境保全法 제 5조 제 2항 참조. \*

## 環境保全에 관한 상담 항시 協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社團法人 環境保全協會에서는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指導, 계몽사업, 각종 자료의 열람·발간, 自家測定, 셰미나 등의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 會員社와 會員 여러분 및 「環境保全」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항시 저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서 울 本 会 : 홍보부 753-7669(중구·남대문로 4 가 45)  
 총무부 753-7640( " )  
 홍보관 756-6141~2( " )  
 연수부 352-6841(은평구 불광동 280-17)  
 개발부 718-3410·5836(마포구 공덕동 105-90)

부 산 지 부 : 사무국 463-7801(중구 중앙동 6 가 36)  
 인 천 지 부 : 사무국 762-9171(중구 사동 9-1)  
 경 기 지 부 : 사무국 6-1175(수원시 정자동 80-17)  
 강 원 지 부 : 사무국 52-4321(춘천시 소양로 3 가 32)  
 충 북 지 부 : 사무국 52-0025(청주시 북문로 2 가 116-84)  
 충 남 지 부 : 사무국 253-9823(대전시 은행동 143-2)  
 전 북 지 부 : 사무국 6-3014(전주시 전동 2 가 140-11)  
 전 남 지 부 : 사무국 364-5600(광주시 서구 농성동 652-1)  
 대구·경북지부 : 사무국 755-2933(대구직할시 동구 신천동 5 구 107)  
 경 남 지 부 : 사무국 93-1888(마산시 산호동 17-5)  
 제 주 지 부 : 사무국 23-2164(제주시 이도이동 1176-50)

**社團  
法人 環境保全協會**